

한 걸음 더 현장 속으로!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

# 표절검사 시스템 확대 운영계획(안)

---

2016. 2.



# 표절검사 시스템 확대 운영계획(안)

‘표절검사 시스템 운영계획’(기획팀-1452, 2015. 9. 3)에 의거 기 시행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등의 표절 검사’ 제도에 대하여 표절검사 대상 확대, 연구자에게 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I

## 현황

### '15년부터 표절검사 시스템 시범운영 중

### 대상과제: 정책·기초·현안과제 보고서 중심으로 운영

※ 필요시 워킹·이슈·솔루션페이퍼, 협력연구 보고서 및 외부 원고 등에도 운영

### 표절검사: 기획조정본부(기획팀)에서 총괄 운영

#### ○ 표절검사 방법: 전문업체(무하유)의 사이트에서 표절검사 실시 중

- 표절검사 전문업체 사이트([www.copykiller.org](http://www.copykiller.org))에서 사용료를 충전하여 보고서 표절검사 실시 중

#### ○ 운영 절차: 보고서 제출 → 표절 검사 → 검사결과 후속조치 등

보고서 등 파일 제출  
(연구책임 → 기획팀)

· 원장 최종보고 시 지시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출  
· 제출처 : 기획팀 담당에게 이메일 제출



표절 검사  
(기획팀)

· 기획팀에서 외부 전문사이트를 활용하여 표절검사 실시  
· 연구책임자에게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전달



표절 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

· 표절률 30% 미만: 편집출간팀에 보고서 최종파일 제출(연구책임)  
· 표절률 30% 이상: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점검 및 조치 지시

#### ○ 표절률 관리: 표절률 30%(법조문 등 제외)이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II 확대 운영계획(안)

### □ 주요 개선내용: 표절검사 대상과제 및 사용자 확대 운영

※ '15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확대 운영

기 존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과제 중심으로 운영</li> <li>• 기획팀에서 프로그램 전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보고서, 외부 위탁 및 원고 등에 까지 확대</li> <li>▪ 전 연구진 프로그램 사용(시스템 오픈 운영)</li> <li>▪ 표절검사 결과 모니터링 강화</li> </ul>

### □ 대상과제: 자체·수탁·협력과제, 출장·연수보고서, 위탁연구, 원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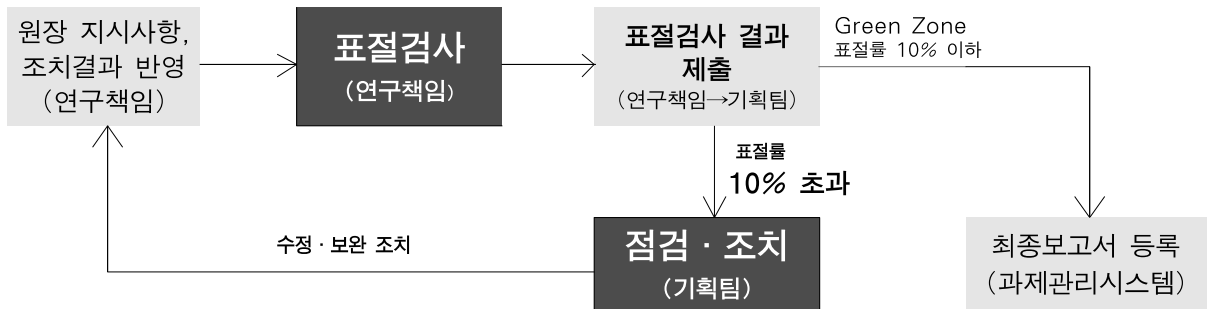
### □ 시스템 사용 권한: 전 연구진으로 확대 운영

### □ 표절률: 10% 이하로 관리 강화('15년 30% 미만)

※ 유사성 10% 이하: "Green Zone"

### □ 운영절차

#### 〈자체연구〉



○ 원장 최종보고 시 지시사항 등을 보고서에 반영 후 표절검사 실시

○ 표절검사: 연구책임자가 전문사이트를 활용하여 표절검사 실시

○ 표절검사 결과를 기획팀에 제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별첨자료 참조

※ 표절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 표절률 10% 이하: 연구책임자가 보고서 최종파일을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

○ 표절률 10% 초과: 점검(기획팀) → 수정·보완 및 재검사 실시(연구책임)

## 〈수탁·협력연구, 위탁, 원고 및 출장·연수보고서 등〉

-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
- 필요시 기획팀에 제출 및 점검 등

### 대상업체 및 계약방법 등

- 대상업체: 주식회사 무하유(대표 신동호)
  - 인터넷 사이트 주소: [www.copykiller.org](http://www.copykiller.org)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우리 원 회계규정 제128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4호 및 7호

- 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및 기타 계약의 경우
      - 7.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 제1항 제4호

-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주식회사 무하유는 국내 최대의 DB와 학술저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고서 등의 표절 산출장치 및 방법의 특허를 소유하여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검사기준과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수의계약 사유서 및 특허 관련 자료 등 별첨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연간 계약 시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소요예산: 12,000천원

- 예산과목: 경영사업비, 편집출간 관리, 간행물 발간
- '15년 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해 해당업체 사이트([www.copykiller.org](http://www.copykiller.org))에서 이미 결제한 충전 금액(1,500천원) 중 미사용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차감

### Ⅲ

## 행정사항

**대상업체와 계약체결:** 기획팀 지급품의 결제 → 재무팀 계약 실시

**연구원 내부포털과 표절검사 사이트 연계:** 정보서비스팀

○ 연구자들이 One-stop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표절검사 직원 교육실시**

○ 시스템의 원만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

○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공지

### ※ 별첨자료

1.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2. 수의계약 사유서 및 특허 관련 자료 등



# 수의계약 사유서

## 1. 계약건명

- 표절검사 시스템 연간 사용 라이선스 구매

## 2. 계약대상자

- 기관(업체)명 : (주)무하유
- 사업자등록번호 : 206-86-55577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706호
- 대표자 : 신동호
- 대표전화 : 02-2115-8765

## 3. 수의계약 사유

- 우리 원 회계규정 제128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4호 및 7호

4.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및 기타 계약의 경우  
7.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주식회사 무하유는 국내 최대의 DB와 학술저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고서 등의 표절 산출장치 및 방법의 특허를 소유하여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검사기준과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특허증]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10-1264151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2012-0118411 호
	출원일 (FILING DATE:YY/MM/DD)	2012년 10월 24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YY/MM/DD)	2013년 05월 08일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문서 표절을 산출 장치 및 방법,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특허권자 (PATENTEE)  
주식회사 무하유(11011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8-4,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1707호

발명자 (INVENTOR)  
등록사항관에 기재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3년 05월 08일



**특 허 청 장 김 영**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연차등록료 납부일은 실정법규일 이후 4년차부터 매년 05월 08일까지이며 등록원부도 권리관계를 확인 바랍니다.

[특허증]



# 특 허 증

CERTIFICATE OF PATENT

특 허 제 10-1470547 호 (PATENT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2014-0113959 호
	출원일 (FILING DATE:YY/MM/DD)	2014년 08월 29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YY/MM/DD)	2014년 12월 02일

발명의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독음데이터를 이용한 문서 표질을 산출 방법 및 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저장매체

특허권자 (PATENTEE)

주식회사 무하유(11011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705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  
몽디지털타워1차)

발명자 (INVENTOR)

등록사항란에 기재

위의 발명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등록원부에 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ATENT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년 12월 02일



특 허 청 장 김 영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양자등록료는 2017년부터 매년 12월 0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원부로 권리관계를 확인바랍니다.

[상표등록증]



# 상표등록증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등록 제 40-0953165 호 (REGISTRATION NUMBER)	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제 2012-0020829 호
	출원일 (FILING DATE:YY/MM/DD)	2012년 03월 28일
	등록일 (REGISTRATION DATE:YY/MM/DD)	2013년 02월 13일

상표권자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주식회사 무하유(11011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8-4,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  
차1707호

상표를 사용할 상품 및 구분  
(LIST OF GOODS)

제 09 류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등 19건



위의 표장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RADEMARK IS REGISTERED ON THE REGIST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 허 정  
COMMISSIONE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3년 02월 13일

본속기간갱신등록신청일은 2023년 02월 13일까지이며 등록원부로 권리관계를 확인바랍니다.